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(2심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
3. 판결·결정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 2. 피고는 원고에게 1,060,337,2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 3.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4. 판결·결정사유	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일부 인정되고, 원고의 펀드설정 관여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, 피고의 책임비율을 40%로 제한
5. 관할법원	서울고등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1년 1월 21일
7. 확인일자	2021년 1월 25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2심에서 당사 항소 일부 인용으로, 지급금액 환수 예정